

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6. 12. 13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11월 20일 · 종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21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7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6. 12. 13) 상정 · 수정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종 인)

가. 개정이유

○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확산,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,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정비

-동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

-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도모

○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

-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하여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

○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강화

-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(중선거구제)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

- 위원장·부위원장·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의 활성화 도모
-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, 각종 교육·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

○ 나 승 혁 위원 의 수정안 동의

6. 修 正 案 의 要 旨

○ 수정이유

- 안 제17조제1항 중 “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”를 “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이 되며 동별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”로 하는 것은 구의원이 당연직 상임고문에서 제외 될 경우 지역발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우므로, 구의원이 직책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.
- 안 제17조의3 중 “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”를 “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”로 하는 것은 위원장 직위를 장기간 유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유능한 여러 위원들이 위원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○ 수정안 본문

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함.

제17조(구성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이 되며 동별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.

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함.

제17조의3(임기)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7. 審 査 結 果 : 수정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함)

**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
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7조제1항 중 “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”를 “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이 되며 동별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”로 한다.

안 제17조의3 중 “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”를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“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7조(구성 등) ①위원 은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 인 이내로 구성하되,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 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이 되며, 3인이 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.	제17조(구성 등) ①위원 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 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.	제17조(구성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 고문이 되며 동별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.
②동장은 당해 동사무 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 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 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 하거나 자치센터 의 운영에 필요한 전 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	②-----동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선정된 자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② (개정안과 같음)
1.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, 통장대표,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 육·언론·문화·예술 기 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추천하는 자	

현행	개정안	수정안
2.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<u>선출된 후보자</u>	2. ----- ----- <u>선정된 자</u>	
③~④ (생략)	③~④ (현행과 같음)	③~④ (개정안과 같음)
⑤ <u>당연직이 아닌 고문</u> 은 동장이 위촉하되, 당해 <u>동사무소</u> 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.	⑤ <u>고문</u> ----- ----- -- <u>동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⑤ (개정안과 같음)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	⑥ (개정안과 같음)
제17조의3(임기)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<u>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	제17조의3(임기)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<u>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	제17조의3(임기) (현행과 같음)